

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00. 2. 23
- 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0. 2. 23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7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(2000. 2. 29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홍진표)

개정이유

-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서 기금은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예치토록 한 규정에 의거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는 부천시아동복지기금을 부천시금고에 예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적립기금을 예치할 경우 시금고보다 높은 이자의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하므로 기금에 대한 이자수익 증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,
- 행정자치부의 금고운영개선지침(기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금고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- 99. 1. 27)에 의거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기금을 부천시금고에 예치토록 하는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기금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안전성 확보와 이자수익을 증대하고자 함

주요골자

- 기금의 운영·관리 - 조성된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적립기금은 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 운용한다.(안 제2조제3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없 음	없 음

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293호
의결년월일	2000. 3. 3 (제77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2. 23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개정이유

-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1항에서 기금은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예치토록 한 규정에 의거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는 부천시아동복지기금을 부천시금고에 예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적립기금을 예치할 경우 시금고보다 높은 이자의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하므로 기금에 대한 이자수익 증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,
- 행정자치부의 금고운영개선지침(기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금고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- 99. 1. 27)에 의거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기금을 부천시금고에 예치토록 하는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기금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안전성 확보와 이자수익을 증대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기금의 운용·관리 - 조성된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적립기금은 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 운용한다.(안 제5조제2항)

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제2항 중 “시금고에 예치·관리한다.”를 “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중 금융

기관에 예치하되 적립기금은 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②시장은 기금을 <u>시급고</u> 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	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②시장은 기금을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<u>적립기금은 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</u>